

美 EO14257 인용법 IEEPA의 판결 및 합의: 통상법에 의거한 공격적 일방주의

경기대학교 무역학과 조교수 김 민 재*

*논문접수 : 2026. 4. 20. *심사개시 : 2026. 4. 22. *게재확정 : 2026. 5. 11.

〈목 차〉

I. 서언	4. 3심: 연방대법원 판결
II.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 개관	IV. IEEPA와 공격적 일방주의의 시사점
1. 제정 배경 및 정의	1. 판결의 합의: 대통령 권력의 견제
2. 법률 체계 및 조문	2. 美 통상법과 공격적 일방주의
3. 문제점 및 한계	3. 경제안보 관점에서의 법리적 고찰
III. 관세 행정명령의 판결과정 및 논의점	V. 결론
1. 상호관세 행정명령 발동	참고문헌
2. 1심: 국제무역법원(CIT) 판결	
3. 2심: 연방순회항소법원(CAFC) 판결	

I. 서언

최근 미국을 위시한 주요 국가들은 기존의 다자주의적 통상규범을 기반으로 한 질서에서 점차 이탈하여 자국의 전략적 이익을 우선시하는 일방적 통상조치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첨단기술을 중심으로 한 미중 패권분쟁을 계기로 수출통제·관세 정책 등의 무기화를 통해 미국의 對중국 정책에 동맹국들의 참여를 주문하였는데,¹⁾ 현재는 우방국을 포함한 범세계적 규모의 관세조치를 단행하였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통상정책은 단순한 무역조정 수단을 넘어 외교·안보 정책과 긴밀히 결합된 이른바 경제적 외

*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무역학과 경제학박사, 국제물류·통상전략 전공

1) 류예리, “미국 상호관세 협상에서의 경제안보와 지식재산권 보호 연계에 관한 연구”, 「국제거래와 법」, 통권 51호, 208-209면, 2025.

교술(Economic Statecraft)의 핵심 수단으로 기능하고 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2025년 1월 20일 출범한 트럼프 행정부 2기는 ‘국제비상경제권한법(International Emergency Economic Powers Act: IEEPA, 이하 IEEPA)’을 근거로 한 관세행정 명령 EO14257(Executive Order 14257)을 시행함으로써 기존 통상법 체계에 중대한 문제를 제기하였다. IEEPA는 본래 국가비상사태 선언 후 외환거래, 자산동결 등 경제적 제재를 통해 외국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법률로 이해되어 왔으며, 전통적으로 관세와 같은 조세적 조치를 직접적으로 규율하는 법률로는 인식되지 않았다. 미 행정부는 동법상 “수입을 규제(regulate importation)”할 수 있는 권한을 근거로 포괄적인 관세 부과로서 정당화하려 하였고, 이는 통상법과 헌법상 권력분립 구조에 관한 중요한 법적 쟁점을 야기하였다.

이러한 문제의식은 곧바로 사법적 통제로 이어졌다. 2025년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조치에 대해 다수의 주정부 및 기업들이 소송을 제기하였으며, 연방국제무역법원(Court of International Trade: CIT, 이하 CIT), 연방순회항소법원(Court of Appeal for the Federal Circuit: CAFC, 이하 CAFC), 그리고 연방대법원(Supreme Court of the United States)에 이르는 일련의 심리를 통해 IEEPA의 권한 범위와 대통령의 통상정책 권한에 대한 해석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졌다. 특히 연방대법원은 IEEPA가 대통령에게 일반적이고 포괄적인 관세 부과 권한을 부여하지 않는다고 판단함으로써, 행정부의 권한 확대 시도를 전면적으로 제한하였다.

IEEPA와 관련한 국내 선행연구는 본고 집필 시점 매우 제한적으로, 2026년 2월 20일의 연방대법원 판결 이후 IEEPA에 대해 고찰한 연구논문은 단 1편에 불과하다. 김상만(2026)은 IEEPA 상호관세의 연방대법원 판결 요지를 대통령의 관세 부과 권한과 연방헌법과의 충돌, 의회수권원칙, 법 조문 해석 원칙 등에 기반하여 분석하였으며 이에 따른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CAFC 항소심 심리까지의 내용을 다룬 연구논문으로는 이상신(2026)의 연구가 있다. CAFC에서의 판결과 관련하여 근거법의 위헌성이 인정되며 관세부과 조치 자체에 대한 판단이 아니라는 점, 나아가 무역법 122조 및 301조 등의 후속적 위협이 상존한다는 점, 차후의 환급절차와 관련한 불확실성이 여전히 크게 존재한다는 등의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해외 주요 연구로는 Mitchell(2026)의 연구가 IEEPA에 따른 상호관세의 경제·비경제적 성질을 분석한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취지와 상당히 부합한다. 해당 연구에서 또한 마찬

가지로 IEEPA가 Economic Statecraft의 법적 근거로서 기능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나아가 미국의 안보 담론 및 제재 관행이 주요국 간의 상호 경쟁적 맥락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Rong(2025)의 연구에서는 IEEPA 활용의 무기화 현상이 현저해지고 있으며, 단기적 경제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비상조치라는 본래의 목적에서 이탈하였다고 지적하였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IEEPA가 타 법령과 결합적으로 발동되는 빈도가 급증하였으며, 국내법을 패권적 수단으로 전환하려는 미국의 제도 변화와 함께 국제규범의 추가적인 분절화를 초래할 수 있다고 분석하였다. Meyer(2025)는 트럼프 대통령이 재집권 이후 IEEPA를 적용함으로써 행정부 1기 당시 활용하였던 법적 권한을 초월하여 포괄적인 조치들의 법적 근거로서 활용하였다고 주장하고, 해당 관세조치의 적법성을 다투는 소송과 관련한 법적 주장, 진행 상황, 향후 예상 시나리오 및 함의에 대해 설명하였다.

본 연구는 IEEPA의 정의와 법 체계 및 핵심 조항을 분석한 후 1심에서 3심에 이르기까지의 각 법원의 판결을 종합적으로 분석 후 논의점을 도출한다. 해당 소결을 바탕으로 IEEPA 등 여타 통상법을 통해 여전히 광범위한 재량 및 권한을 대통령에게 부여함으로써 상존하는 ‘공격적 일방주의(aggressive unilateralism)’의 성질을 법리학·통상학적 측면에서 심층적으로 분석, 향후의 대응 방향성에 대해 고찰한다는 점에서 학문적·정책적·사회적 함의와 차별성을 갖는다. IEEPA 위헌 판결을 연방헌법상 대통령의 과세 권한 및 의회수권 원칙에 기반하여 대통령 권력의 견제, 미국 통상법의 공격적 일방주의라는 측면에서 고찰하고, 나아가 경제안보 관점에서 IEEPA에 근거한 상호관세 등 행정명령이 Economic Statecraft로서 구현되고 국제규범을 초월하여 실행되어 왔다는 점을 분석하고자 한다. CIT, CAFC 및 연방대법원의 최종 판결의 함의를 현재 미 트럼프 대통령의 연방헌법 상에서 규정하는 권한 범위와 이를 초월하고자 하는 팽창 시도, 나아가 해당 IEEPA 및 기타 통상법을 이용한 일방주의·패권주의적 통상 메커니즘의 구축과 경제안보 전략으로서 기능하는 구조의 본질을 살피고, 향후 국내·국제법 차원에서의 체계적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II.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 개관

1. 제정 배경 및 정의

가. IEEPA의 정의

1977년 10월 28일 제정된 IEEPA는 ‘국가비상사태’가 선포되는 경우 대통령에게 광범위한 경제적 규제 권한을 부여하는 법률이다. 동법에 따르면 국가의 안전보장, 외교, 그리고 경제에 대해 이례적이고 중대한 위협이 발생했다고 판단될 경우 대통령은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하고 다양한 경제적 수단을 활용한 제재를 통해 해당 위협에 대응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²⁾ IEEPA는 국제통상적 규제 권한을 대통령에게 부여하는데 평시 안전보장, 외교, 미국의 경제에 이례적이고 중대한(unusual and extraordinary) 위협이 인정될 경우 통상 혹은 자본거래를 제한할 수 있다.³⁾ IEEPA는 문언상 금수조치 등에 그치고 있으며 관세 인상에 대한 언급은 없다.⁴⁾

나. 입법 경위 및 제정 배경

(1) 적성국교역법

1917년 4월 6일 미국이 제1차 세계대전에 참전함에 따라 독일 및 그 동맹국과의 교역과 국제거래를 통제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에 미국 의회는 동년 10월 “적성국교역법(Trading With the Enemy Act: TWEA, 이하 TWEA)”을 제정함으로써 전시 상황에서 대통령에게 광범위한 경제적 규제 권한을 부여하였다.⁵⁾ 해당 법은 정부의 허가 없이 미국인이

2) Fergusson, If, Dianne. E. Rennack & Jennifer K. Elsea, *The International Emergency Economic Powers Act: Origins, Evolution, and Use*, Washington D.C.: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2020.

3) 미국은 상무부 산업안전보장국(Bureau of Industry and Security: BIS, 이하 BIS) 수출관리규정(Export Administration Regulations: EAR, 이하 EAR)을 통해 근거법령이었던 수출관리법(Export Administration Act: EAA)의 제정으로 BIS 중심의 전문화된 수출통제제도를 건설했다. 최동준, “최근의 미국과 중국의 수출통제제도 강화영향에 대한 비교연구-미국 수출통제개혁법(ECRA) 및 중국수출통제법을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법학논집』, 제25권·제3호·통권73호, 28면, 2020. 2001년 8월 시효 만료에 미 의회가 대처하지 못함으로써 약 17년간 근거법이 부재한 상태에서 수출통제가 실시되어 왔는데, 2018년 8월 수출통제개혁법(Export Control Reform Act: ECRA)이 제정되어 EAR의 항구적 근거법령으로 자리매김할 때까지 IEEPA가 일종의 미봉책과 같은 수단으로서 그 법적 권한을 대행하였다. 小野純子, “米国の対中国輸出管理政策: エマージング・テクノロジーと経済安全保障”, 『国際安全保障』, 第49巻・第1号, 48面, 2021.

4) 川瀬剛志, 『「関税男」トランプは本当に関税を引き上げるか』, 特立行政法人経済産業研究所, 2024.

적국으로 지정된 국가 또는 동맹국과 수행하는 무역 및 금융거래를 금지하는 등 다양한 제재 조치를 가능하게 하여 대통령에게 광범위한 비상 권한을 부여하였다.⁶⁾

비록 동법은 본래 전시를 위한 입법이었으나 1933년 개정을 통해 그 적용 범위가 확대되었다. 세계대공황에 대응하기 위해 경제적 위기 상황에서 국가비상사태가 선포되는 경우에는 전시가 아닌 평시일지라도 대통령이 유사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행정부의 경제적 개입 권한을 제도적으로 강화하였다.⁷⁾

제2차 세계대전 참전 이후 냉전 체제에 이르기까지, 미국은 한국전쟁과 베트남 전쟁 등 일련의 국제 분쟁을 치르는 과정에서 대통령이 반복적으로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이에 기반한 광범위한 권한을 행사하는 관행이 지속되었다. 이러한 권한 행사가 장기간 누적되면서 3권분립 및 헌법적 한계와의 관계에 대한 문제의식이 의회 내에서 제기되었고, 그 결과 TWEA의 적용 및 범위를 재정비하고자 하는 입법 개혁이 이루어지게 되었다.⁸⁾

(2) 국가비상사태법 및 IEEPA 제정

이와 같은 개혁 기초 속에서 1976년 “국가비상사태법(National Emergencies Act: NEA, 이하 NEA)”이 제정되어 대통령이 전시뿐 아니라 평시에도 일정한 요건 하에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할 수 있도록 법적 기반이 마련되었다. 이듬해인 1977년에는 NEA에 기반한 비상사태 선포를 전제로 대외거래를 규제할 수 있는 권한을 체계화하기 위해 IEEPA의 별도의 입법으로 이어졌다. 한편 TWEA는 동년 대통령의 비상 권한 행사시기를 다시금 전시 상황으로 한정하도록 조정되었다.⁹⁾ IEEPA에 따른 대통령의 광범위한 경제적 권한은 NEA가 정한 절차에 따라 국가비상사태가 선포된 경우에 한하여 발동될 수 있으며, 이러한 비상사태 선포는 미국의 국가안보, 외교정책 혹은 경제에 대하여 이례적이고 심각한 위협이 존재하는 경우 이에 대응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한적으로 이루어지도록 규정된다. 아울러 대통령은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함에 있어 해당 비상권한의 행사 근거에 해당되는 법률 조

5) Coates, Benjamin A., The Secret Life of Statutes: A Century of the Trading with the Enemy Act, *Modern American History*, Vol.1·Issue.2, 151-152, 2018.

6) 이서진·박효민, 『미국의 금융제재 방식 및 활용 검토』, 무역안보 brief, 2, 전략물자관리원, 3면, 2021.

7) 상계서, 3면.

8) Fergusson, If, Dianne. E. Rennack, & Jennifer K. Elsea, *supra*, 2020.

9) 조용순, “미국의 「국제비상경제권한법」과 영업비밀의 보호”, 『한국산업보안연구』, 제14권·제1호, 168면, 2024.

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이러한 요건 하에서 IEEPA 관련 규정을 근거로 인용함으로써 특정 개인이나 단체 등 경제 주체를 대상으로 한 무역제한, 거래 금지와 같은 경제적 제재 조치를 취하는 것이 가능해진다.¹⁰⁾

2. 법률 체계 및 조문

가. 법률 체계

IEEPA는 미국 법전(U.S. Code, 이하 U.S.C.) 제50편 “전쟁 및 국방(War and National Defense)”의 제35장 “국제비상경제권한(International Emergency Economic Powers)”의 제1701조부터 제1707조까지로 구성된다.¹¹⁾ IEEPA의 각 조문의 주요 내용을 정리하면 <표 1>과 같다.

<표 1> IEEPA의 주요 조항 및 문언

조항 구분	주요 내용
제1701조: 이례적이고 중대한 위협, 국가비상사태 선포, 대통령 권한 행사	- 대통령은 특정한 위협을 사유로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한 경우 해당 위협에 대응하기 위하여 부여된 권한을 행사할 수 있으며, 이러한 권한 행사는 미국의 경제, 외교정책 및 국가안보에 대한 해당 위협의 대응이라는 목적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함 - 새로운 유형의 위협에 대하여 경제적 제재 권한을 행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협을 근거로 한 별도의 국가비상사태를 신규 선포해야 함
제1702조: 대통령의 권한	- 대통령이 행사할 수 있는 일반적 권한 - 외환거래, 신용장 관련 지급 및 이전, 통화 또는 유가증권의 수출입과 관련된 행위에 대하여 조사, 규제, 또는 금지 조치를 취할 수 있음 - 제재 대상 외국인의 자산과 관련하여 그 취득, 보유, 사용, 이전, 수출입 및 매매 등 일체의 권리 행사에 대하여 조사하거나 규제할 수 있으며, 필요에 따라 해당 행위를 명령·무효화하거나 사전적으로 금지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음 - 미국이 무력 충돌에 관여하거나 외국 또는 외국인으로부터 공격을 받은 경우, 해당 행위에 관련된 국가 또는 그 국민·단체가 미국의 관할권 내에서 보유한 재산을 몰수할 수 있음 - 대통령은 제재 대상사 및 관련 행위에 대한 실효적 규제를 위하여 회계장부, 기록, 계약서 등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정보요청권을 가짐
제1703조: 협의 및 보고	- 대통령은 본 법에 근거한 권한을 행사하기에 앞서 의회와 협의를 거쳐야 함 - 대통령이 해당 법률에 따른 권한을 행사하는 경우, 다음 사항을 포함한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하여야 함

10) 50 U.S.C. §1631, “When the President declares a national emergency, no powers or authorities made available by statute for use in the event of an emergency shall be exercised unless and until the President specifies the provisions of law under which he proposes that he, or other officers will act. Such specification may be made either in the declaration of a national emergency, or by one or more contemporaneous or subsequent Executive Orders published in the Federal Register and transmitted to the Congress.”

11) 조용순, 전계논문, 169면, 2024.

조항 구분	주요 내용
	① 권한 행사가 요구되는 상황의 내용 ② 해당 상황이 미국이 국가안보, 외교정책 또는 경제에 대하여 이례적이고 중대한 위협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근거 ③ 위협에 대응하기 위하여 행사된 권한 및 구체적인 조치의 내용 ④ 해당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이유 ⑤ 조치의 대상이 된 국가에 대하여 해당 조치를 취할 필요성 • 대통령의 권한 행사 사실을 의회에 통지한 이후에도 조치의 이행 상황 및 관련 환경의 변화 등을 지속적으로 보고하여야 하며, 최소 6개월마다 대상국의 상황과 조치의 집행 현황 등을 포함한 정기 보고 실시
제1704조: 규정 공포 권한	• 대통령은 본 법의 권한을 행사하기 위해 필요한 규정(regulation)을 공포할 수 있음
제1705조: 벌칙	• 본 법에 근거하여 발령된 각종 허가, 명령, 규정 또는 금지사항을 위반하거나 위반하려는 시도, 공모 또는 타인의 위반을 유발하는 행위는 모두 위법한 행위로 간주됨 • 불법행위에 대하여는 금전적 제재가 부과될 수 있으며, 그 수준은 25만 달러 혹은 위반액의 2배의 금액 중 보다 큰 금액을 기준으로 함 • 고의로 위법행위를 저지른 경우에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며, 100만 달러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음. 또한 자연인의 경우에는 20년 이하의 징역형이 병과될 수 있음
제1706조: 유보 조항	• NEA에 따른 국가비상사태가 종료된 이후에도 대통령이 외국인의 자산과 관련된 기존의 금지조치를 계속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관련 권한을 일정 범위 내에서 지속적으로 행사할 수 있음 • 국가비상사태는 의회의 공동결의(concurrent resolution)에 따라 종료될 수 있음
제1707조: 미국과 무력 충돌 중인 정부에 대한 다국적 경제 금수 조치	• 미국이 외국의 적대적 행위에 대응하여 군사력을 동원하는 경우, 해당 국가를 대상으로 다자적 경제 제재를 추진하거나 금융자산의 동결 또는 압수와 같은 조치를 병행하는 정책적 수단을 활용할 수 있음

자료: 조웅순, “미국의 「국제비상경제제한법」과 영업비밀의 보호”, 『한국산업보안연구』, 제14권·제1호, 170-171면, 2024 일부 참조.

주: 본래 §1708-§1709에 각각 해당하는 ‘사이버공간에서의 경제스파이 또는 산업스파이에 대한 대응’ 및 ‘미국인의 영업비밀 절도에 관한 제재’의 두 조항이 각각 IEIPA에 2015년도, 2023년도에 신설되었으나, 각각의 문제 해결을 위하여 IEIPA가 위치한 U.S.C. 제50편 제35장에 편제된 것으로 법체계로만 보았을 때 IEIPA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의견도 존재한다. 본 연구에서는 연구목적에 부합한 §1701-§1707까지의 내용만을 다루기로 한다.

나. 핵심 문언

IEIPA §201(U.S.C. §1701(a)에 편제)은 “대통령에게 부여된 비상 권한은 대통령이 해당 위협에 대해 국가 비상사태를 선언한 경우에 한하여, 미국의 국가 안보, 외교 정책 또는 경제에 대해 전부 또는 상당 부분이 미국 외부에서 기인하는 이례적이고 중대한 위협(unusual and extraordinary threat)에 대응하기 위해(deal with) 행사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나아가 U.S.C. §1701(b)는 “대통령에게 부여된 권한은 본 장의 목적상 국가비상사태가 선언된 이례적이고 중대한 위협을 다루기 위해서만 행사될 수 있으며, 다른 목적으로는 행사될 수 없다”고 규정한다.¹²⁾

U.S.C. §1701

- (a) Any authority granted to the President by section 1702 of this title may be exercised to deal with any unusual and extraordinary threat, which has its source in whole or substantial part outside the United States, to the national security, foreign policy, or economy of the United States, if the President declares a national emergency with respect to such threat.
- (b) The authorities granted to the President by section 1702 of this title may only be exercised to deal with an unusual and extraordinary threat with respect to which a national emergency has been declared for purposes of this chapter and may not be exercised for any other purpose. Any exercise of such authorities to deal with any new threat shall be based on a new declaration of national emergency which must be with respect to such threat.

자료: U.S.C. §1701(a)·(b)

IEEPA §202(a)(1)(B)(U.S.C. §1702에 편제)는 “대통령은 조사 중인 사안에 대하여 조사 또는 조사 진행 중 자산을 동결할 수 있으며, 외국 또는 외국인이 이해관계를 가지는 재산 또는 미국의 관할권에 속하는 재산과 관련하여 그 취득, 보유, 보류, 사용, 이전, 인출, 운송, 수입 또는 수출, 기타 거래나 이에 관한 권리·권한·특권의 행사 또는 해당 재산을 수반하는 거래에 대하여 이를 규제·지시·강제하거나 무효화·취소·예방 또는 금지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50 U.S.C. §1702 - Presidential authorities

(a) In general

- (1) At the times and to the extent specified in section 1701 of this title, *the President may*, under such regulations as he may prescribe, by means of instructions, licenses, or otherwise -

12) 이정아·한주희, 『美 국제무역법원(CIT), IEEPA 관세 무효 판결』, 통상이슈브리프,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 3면, 2025.

(A) investigate, regulate, or prohibit-

(i)-(iii)

(B) investigate, block during the pendency of an investigation, regulate, direct and compel, nullify, void, prevent or prohibit, any acquisition, holding, withholding, use, transfer, withdrawal, transportation, importation or exportation of, or dealing in, or exercising any right, power, or privilege with respect to, or transactions involving, any property in which any foreign country or a national thereof has any interest by any person, or with respect to any property, subject to the jurisdiction of the United States; and.

자료: 김상만, “미국 연방대법원의 IEEPA 상호관세 위법 판결의 주요 쟁점 및 대응방안에 관한 고찰”, 『법학연구』, 제29집·제1호, 244-245면, 2026.

IEEPA §207(b)(U.S.C. §1706에 편제)는 “제(a)(1)항에 규정된 권한은 NEA §202(50 U.S.C. §1622)에 따라 의회의 공동결의에 의해 국가비상사태가 종료되고, 해당 공동결의에서 이러한 권한의 지속적 행사를 허용하지 아니한다는 점이 명시된 경우에는 본 조항에 근거하여 더 이상 행사될 수 없다”고 규정한다.

SEC.207.(b) The authorities described in subsection (a)(1) may not continue to be exercised under this section if the national emergency is terminated by the Congress by concurrent resolution pursuant to section 202 of the National Emergencies Act[50 U.S.C. 1622] and if the Congress specifies in such concurrent resolution that such authorities may not continue to be exercised under this section.

자료: 이누리,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행정명령의 합헌성 논쟁: 5.29.자 미국제무역법원의 위헌 판결 분석을 중심으로”, 세계헌법재판 조사연구보고서 2025년 제5호, 143면, 2025.

3. 문제점 및 한계

TWEA에 따라 확대된 대통령의 권한을 통제하기 위한 입법적 대응으로 IEEPA가 제정되었으나, 그 운용과 관련하여 몇 가지 한계가 지적된다. 첫째, 비상사태 선포의 요건으로서 제시된 “이례적이고 중대한 위협(unusual and extraordinary threat)”의 개념 및 범위가 명확

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아, 해석의 폭이 넓고 자의적 적용 가능성이 존재한다. 둘째, 제재 대상이 되는 외국인 또는 법인 등에 대하여 외환 및 금융거래, 미국 내 자산의 사용·이전, 수출입 등을 광범위하게 제한할 수 있도록 한 점에서 대통령에게 부여된 권한의 범위가 여전히 과도하다는 비판이 제기된다.¹³⁾ 셋째, 비상사태의 선포가 대통령의 행정명령을 통해 비교적 용이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반면, 사전에 요구되는 의회와의 협의는 강행적 의무라기보다 선언적 성격에 머무는 임의규정에 불과하다는 점이다.¹⁴⁾

IEEPA는 NEA에 따라 상·하원의 공동결의(concurrent resolution)를 통해 비상사태를 종료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비상사태 상황 종료 이후에도 대통령이 권한을 지속적으로 행사하는 경우 이를 견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관련하여 *INS v. Chadha* 판결에서 연방대법원이 입법부가 행정부의 조치를 단독으로 무효화하는 방식의 입법장치를 위헌으로 판단한 바 있어, 이러한 법리는 IEEPA의 효력 정지를 위한 공동결의에도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¹⁵⁾ 그 결과 의회의 견제 기능이 실질적으로 제약될 수 있다는 점에서 IEEPA의 권력 통제 구조에는 일정한 한계가 존재한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III. 관세 행정명령의 판결과정 및 논의점

1. 상호관세 행정명령 발동

가. 배경 및 경위

도널드 트럼프(Donald J. Trump)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부터 자신이 대통령으로 당선될 경우 관세를 활용한 대외정책을 전개해 나갈 것이라 반복적으로 주장하였다. 2025년 1월 20일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해당 공약을 실시하기 위한 추가 관세조치를 발표 및 실시하였다. 트럼프 1.0의 관세정책과 2.0의 관세정책 간의 가장 큰 차이는 2.0의 관세가 거의 모든 국가에 대해, 그리고 거의 모든 제품에 대해 부과된다는 점에 있어, 우리나라의 최대 수출대상국인 對미 수출에 차질 또한 불가피한 실정이다.¹⁶⁾¹⁷⁾

13) Carter, Barry E., *International Economic Sanction: Improving the Haphazard U.S. Legal Regime*, 206, 1998.

14) 조용순, 전제논문, 172면, 2024.

15) 최철영, 『미국의 대외경제제재관련 법제연구』, 한국법제연구원, 58면, 2001.

16) Hayakawa, K., *Trade Effects of US Tariffs under Trump 2.0*, IDE Discussion Paper 976 2025-09, Institute of

트럼프 행정부 2기가 부과한 관세의 종류는 다양하나, 가장 대표적이며 커다란 영향력을 발휘한 것은 상호관세(reciprocal tariff)이다. 상호관세는 트럼프 행정부가 문제시하고 있는 미국의 항구적이며 나날이 증대하는 무역적자의 해소를 달성하기 위해 부과하는 것으로, 4월 2일 발동한 행정명령 EO14257(Executive Order 14257: Regulating Imports with a Reciprocal Tariff to Rectify Trade Practices that Contribute to Large and Persistent Annual United States Goods Trade Deficits)에 의해 원칙적으로 전 세계로부터의 전 수입품목에 대해 4월 5일부로 10% 기반의 일률적 관세가 부과되었다. EO14257 부속서(Annex I)에서 특정된 우리나라를 포함한 57개국 및 지역으로부터 수입되는 품목에 대해서는 국가·지역 별로 상이한 상호관세율이 설정되었다.¹⁸⁾¹⁹⁾

트럼프 대통령은 2025년 4월 10일 이후, 중국 외의 국가들에 대해서는 90일간 관세인상을 중지한다고 발표함으로써 일단 해당 국가들의 관세율은 일률적으로 기본 10%에 그치게 되었으며, 해당 관세조치는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적자 및 그 근간에 있는 비(非)상호주의적 대우가 야기하는 위협이 해소 또는 완화되었다고 판단할 때까지 유효하다고 발표하였다.²⁰⁾

Developing Economies(IDE-JETRO), 2, 2025.

17) 우리나라를 포함한 제3국이 미국시장에 대한 대안으로서 對중국 수출을 확대할 것이라는 주장이 중론이며 주요국들이 실제로 중국과의 외교협상을 긍정적으로 전개하고 있다. 그러나 對미 수출이 곤란해진 중국 수출기업들이 중국 국내시장 판매를 더욱 확대함으로써 경쟁이 심화되어, 제3국의 對중 수출은 오히려 감소했다는 연구가 존재하는 등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정책으로 인한 불확실성과 파장은 매우 크다. 早川和伸, 『第2回 トランプ2.0が世界の対米輸出に与えた影響-相互関税導入前まで』, 世界を見る眼【特集】世界はトランプ関税にどう対応したか, アジア経済研究所『IDEスクエア』, 1面, 2025.

18) JETRO, 『第2次トランプ政権の追加関税措置』, 日本貿易振興機構, 2面, 2025.

19) IEEPA를 근거로 한 관세 행정명령에는 전 세계의 국가 및 지역에 부과한 10%의 보편관세와 더불어 국가 및 지역별로 차등 부과된 상호관세 발령인 EO14257 이외에도 對캐나다·멕시코·중국의 불법 이민 및 합성마약에 대한 보복적 대응으로서 부과한 EO14193·14194·14195, 베네수엘라산 원유 및 천연가스를 수입한 국가에 대한 제재로서 부과한 EO14245 등 추가적인 관세 행정명령이 존재한다. 上掲書, 11-15面. 본 연구에서는 세계적으로 가장 큰 파급과 혼란을 가져온 상호관세 행정명령인 EO14257을 중점적으로 논한다. 이후의 심리 과정, 특히 CIT의 1심에서 EO14257 이외의 행정명령은 비상사태와 조치 간의 “직접적인 연계성(direct link)”이 부족하며, 미 행정부가 주장한 무역적자를 해소하기 위함이라기보다 상대국 압박 수단으로 분석되며, 비상사태 대응 효과를 의도한 “협상 지렛대(leverage)” 성격의 조치로 판단되어 법률상 요건을 미충족한다는 결론이 내려졌다. EO14257 이외의 행정명령은 연방법원의 심리에서 IEEPA가 위헌으로서 판단되는 근거의 일환으로서 포함되기에 본 장에서 함께 언급해두고자 한다. 한아름·이유진, 『美 IEEPA 관세 판결 전 관세환급 실무대응 점검』, TRADE BRIEF, NO 04,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 2면, 2026 참조.

20) JETRO, 『トランプ政権の関税措置の解説』, 日本貿易振興機構, 4面, 2025.

<표 2> IEEPA 적용 관세 조치

조치	근거 행정명령		부과 근거
對캐나다·멕시코·중국 관세	EO14193	對캐나다 관세 부과	불법 이민·합성마약
	EO14194	對멕시코 관세 부과	
	EO14195	對중국 관세 부과	
상호관세	EO14257	모든 수입품에 대해 기본 10% 관세 부과	무역적자
		57개국에 대해 최대 50%까지 차등 관세 부과	

자료: 한아름·이유진, 『美 IEEPA 관세 판결 전 관세환급 실무대응 점검』, TRADE BRIEF, NO 04,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 2면, 2026.

<표 3> 2025.4.10. 시점 주요국 및 지역에 대한 관세율

국가·지역	상호관세율
캄보디아	49%
중국	125%
콩고민주공화국	11%
유럽연합(EU)	20%
인도	26%
인도네시아	32%
이라크	39%
이스라엘	17%
일본	24%
라오스	48%
말레이시아	24%
미얀마	44%
나이지리아	14%
노르웨이	15%
파키스탄	29%
필리핀	17%
남아프리카공화국	30%
한국	25%
스위스	31%
시리아	41%
대만	32%
태국	36%
베트남	46%

자료: JETRO, 『トランプ政権の関税措置の解説』, 日本貿易振興機構, 5面, 2025.

주: 총 57개국의 데이터가 있으나 지면 관계상 연구자의 주관에 따라 주요국을 선별함

정리하면 2025년 4월 2일 EO14257을 통해 발령된 모든 국가에 대한 10%의 보편관세와 우리나라를 포함한 주요 무역적자국에 대한 10-50%의 상호관세는 기존 국제통상규범 및 체제를 우회한 일방주의적·자국중심주의적 조치로서 국제무역질서에 커다란 충격과 혼란을 초래하였다.²¹⁾

나. 귀결

이후 2025년 10월 29일 우리나라 경주에서 개최된 APEC(Asia-Pacific Economic Cooperation: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 연계 한미 정상회담에서 우리나라의 대미 주력 수출품목인 자동차·부품에 대한 관세를 일본 및 EU와 동일한 수준인 15%로 인하하는 품목별 관세 조정에 합의하고 상호관세 또한 15%로서 지속 적용하기로 합의하였다. 적용 시점은 대미 투자 관련 법안의 국회 제출 시점을 기준으로 소급 적용하기로 결정하였으며, 2026년 3월 17일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 전략적 투자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대미투자특별법)”이 제정되었다.²²⁾

대미투자특별법은 APEC 연계 한미 정상회담에서 이루어진 상호관세율의 조정 및 이에 따른 대미 금융투자를 실행에 옮기기 위한 일종의 ‘안전판’ 역할을 수행한다. 현금투자 2,000억 달러+조선업협력 1,500억 달러로 구성된 총액 3,500억 달러의 대미 금융투자가 결정되었으며, 연간 투자 상한을 200억 달러로 설정하여 ‘상업적 합리성’을 보유한 사업에 단계적으로 투자해 나가기로 합의하였다.²³⁾²⁴⁾

2. 1심: 국제무역법원(CIT) 판결

가. 개요

트럼프 행정부 2기에서 IEEPA를 근거로 한 EO14257 관세 조치를 도입하자 민주당 소속

21) 서은아, 『IEEPA에 근거한 트럼프 행정부 관세 조치에 관한 법적 쟁점 검토』, IFANS 주요국제문제분석 2025-16,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 1면, 2025.

22) KOTRA, APEC 연계 한미 정상회담(10.29, 경주) 타결 주요 내용, 2025.

23) 상계서.

24) The White House, Fact Sheet: President Donald J. Trump Brings Home more Billion Dollar Deals During State Visit to the Republic of Korea, 2025.

12개 주, 캘리포니아 주지사 및 법무장관, 중소기업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은 해당 조치의 법적 정당성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하였다. 2025년 2월부터 4월까지 약 3개월간 CIT와 연방지방법원에 제기된 소송은 총 8건에 이른다.²⁵⁾

이들 사건에서 원고들은 공통적으로 IEEPA가 대통령에게 일괄적이고 포괄적인 관세 부과 권한을 부여하는 법률이 아니며, 이를 근거로 한 관세 조치는 헌법상 의회에 귀속된 관세 부과 권한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무역적자가 법률상 요구되는 “이례적이고 중대한 위협(unusual and extraordinary threat)”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하는 한편, 대통령이 기존의 무역 관련 법률 대신 IEEPA를 근거로 관세를 부과한 것은 권한 행사의 적절성 측면에서도 문제가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²⁶⁾

판결문에서는 EO14257 등에 포함되는 세계적인 보복관세 및 약물 대처를 위한 對중국·멕시코·캐나다 관세에 대해 각각 “세계적인 보복관세는 IEEPA에 의거하여 부여된 대통령의 권한을 초과하고 있다”, “규정된 위협에 대처하고 있지 않다”고 판시하였다.²⁷⁾

나. 판결

2025년 5월 28일 CIT는 V.O.S. Selections(美 기업 5개사 대리 자유정의센터(Liberty Justice Center)) 사건과 오리건주 등 관련 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한 후, IEEPA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조치를 전면적으로 무효화하고 영구금지명령을 발령하였다. 재판부는 상호관세와 관련하여 IEEPA가 무역불균형 해소를 목적으로 한 관세 부과 권한을 대통령에게 부여하고 있지 않다고 보았으며, 펜타닐 관세에 대해서도 해당 조치가 선언된 비상사태에 직접적으로 대응하기 위한(to deal with) 수단이라기보다는 대외적 압박 수단으로써 기능한다는 점에서 IEEPA의 권한 범위를 일탈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아울러 재판부는 IEEPA가 대통령에게 무제한적인 관세 부과 권한을 부여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없으며, 이러한 관세 조치가 연방헌법 상의 권력분립 원칙과의 관계에서 문제를 야기할 수 있음을 명시하였다.²⁸⁾

25) 서은아, 전게서, 16면, 2025.

26) 상게서, 16면, 2025.

27) 前田和馬, 『米国際貿易裁判序がトランプ関税の差し止め命令〜今後の3つのシナリオ〜』, US Trends, 第一生命経済研究所 経済調査部, 2025.

3. 2심: 연방순회항소법원(CAFC) 판결

美 법무부는 본건에 대해 CAFC에 항소장을 제출하고 CAFC는 이를 받아들이며 5월 29일, CIT 판결 효력을 임시 정지하였다.²⁹⁾

2025년 8월 29일 CAFC는 트럼프 행정부가 부과한 상호관세 및 중국·멕시코·캐나다에 부과한 국가별 관세에 대해, 대통령은 IEEPA를 인용한 비상사태를 근거로 하여 수입품에 대해 광범위하고 무제한적인 관세를 부과할 권한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고 판단하였다. 해당 판결은 미국의 대부분의 무역상대국으로부터의 수입품에 대해 광범위한 관세를 부과한 5개의 대통령령이 대통령의 법적 권한을 초월하고 있다는 하급심 판결을 지지하였다.³⁰⁾

법원은 IEEPA가 대통령에게 “수입을 규제”할 권한은 인정하고 있으나 그 권한에는 본건과 같은 대규모 및 무제한적인 관세부과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판단하였다. 본 판결은 IEEPA를 근거로 하는 모든 관세조치에 대해 판단한 것은 아니며, 어디까지나 본 사건의 관세조치에 국한되어 있어 무역확장법 232조, 통상법 301조 및 그 밖에 법령을 근거로 하는 관세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³¹⁾

4. 3심: 연방대법원 판결

가. 개요

Learning Resources 사건(제1심)은 두 개의 중소기업이 워싱턴 DC 연방지방법원에 제기한 소송으로, 피고인 미국 정부는 CIT의 전속관할임을 주장하며 사건의 이송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해당 법원은 IEEPA에 근거한 조치는 전통적인 관세 영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이송 신청을 기각하고, 원고가 제기한 효력정지 가처분을 인용하였다. 이후 이 사건

28) 한편 워싱턴 DC의 연방지방법원은 5월 29일 *Learning Resources* 사건에서 피고인 정부 측의 CIT 이첩 신청을 기각하고 원고의 예비적 금지명령 신청을 인용하였다. 해당 사건의 판사는 ‘IEEPA는 관세를 규율하는 법령이 아니므로’ CIT가 아닌 지방법원이 관할권을 가진다고 판단하며 IEEPA의 “규제(regulate)” 권한이 “과세(tax)” 권한과는 구분된다고 명확히 시사하였다. 서은아, 전게서, 16-17면, 2025.

29) 市川雅浩, 『米国國際貿易裁判所のトランプ関税一部差し止め命令と今後の展望』, 市川レポート, 三井住友DSアセットマネジメント, 2面, 2025.

30) PWC, 『米国連邦巡回区控訴裁判所(CAFC)による相互関税および中国, メキシコ, カナダに対する国別関税に関する判決』, Customs and Trade News, 1面, 2025.

31) 上掲書, 1面

은 항소심을 거치지 않고 연방대법원에 직접 상고 신청(a petition for certiorari before judgment)이 이루어졌다. 한편, *V.O.S. Selections* 사건은 와인 수입업체 등 5개의 중소기업이 CIT에 제기한 소송으로, IEEPA에 근거한 관세 조치의 효력 정지를 구하는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었다. 이후 항소심은 CAFC에서도 IEEPA가 대통령에게 광범위하고 무제한적인 과세 권한을 부여하는 법적 근거가 되지 않는다는 판단이 유지되었다.³²⁾

이후 연방대법원은 해당 두 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함으로써 IEEPA에 근거한 관세 조치의 법적 성격과 대통령 권한의 범위에 관한 쟁점을 통합적으로 검토하였다.

나. 판결

2026년 2월 20일 미 연방대법원은 트럼프 행정부가 발동한 EO14257 및 EO14193-14195 등 관세행정³³⁾의 근거법인 IEEPA에 대해 1·2심에 이어 동법은 대통령에게 관세부과 권한을 인정하고 있지 않다는 무효판결을 내렸다.

(1) 헌법상 과세부과 권한

판결의 핵심 요체는 ‘규제적 조치(regulatory controls)’와 ‘세수 및 관세설정 조치(revenue)’의 구분이었다. 전자에는 자산동결, 인허가제, 금지조치 등이 포함되나, 관세는 본질적으로 후자에 속한 조치이며 일반적인 규제 권한 관련 문언으로부터 도출될 수 있는 개념이 아니라 판단하였다.³⁴⁾ IEEPA는 대통령에게 수입(importation)을 규제(regulate)할 권한을 부여하지만 과세에 대해 직접 언급하지는 않으며, 통상적으로 “규제”는 관세를 포함한 과세 조치를 포함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³⁵⁾

32) 김상만, 전계논문, 246-247면, 2026.

33) 동 조치에는 ① 모든 국가에 대해 일률적으로 10%의 보편관세를 부과하고 EO14257 ANNEX I 을 통해 미국의 무역적자 수준을 고려하여 국가 및 지역별로 상이한 상호관세를 부과하는 조치, ② 불법이민 및 합성마약(펜타닐) 문제에 대한 관세 조치로서 캐나다 35%, 멕시코 25%(단 USMCA 준거 품목은 조치 연기), 중국 10%(2025년 2·3월에 부과한 10%의 관세는 11월에 10% 인하)의 관세 조치, ③ 브라질 룰라 정권에 의한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에 대한 형사 소추에 대한 조치로서 2025년 8월부터 적용된 브라질에 대한 40%의 관세 조치, ④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을 염두에 두고 안보상의 위협이라 판단하여 러시아산 원유 구매에 대한 대응조치로서 인도에게 부과한 25%의 관세(2025년 8월에 부과하였으나 이후 관세 합의를 통해 철폐) 조치 등을 포함한다. みずほ銀行 国際戦略情報部, 『Global Intelligence Flash 【米国】 第二次トランプ政権の関税政策~司法の判断と今後の展開~』, 株式会社みずほ銀行, 1면, 2026.

34) 上原聡, 『米最高裁 `IEEPA` 関税を違法と判断-判決がもたらす憲法上および政策上の帰結- 丸紅ワシントン報告』, 3면, 2026.

본 사안의 핵심 쟁점은 U.S.C. IEEPA 제1702조 제(a)항 제1호(B)에서 규정한 수입 규제 권한, 즉 “수입을 규제(regulate importation)”할 수 있는 권한에 관세 부과 권한이 포함되는지 여부에 있었다. 트럼프 행정부는 해당 규정이 수입에 대한 전반적 통제 권한을 부여하는 만큼 관세 부과 역시 그 범주에 포함된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연방대법원은 과세권이 헌법상 원칙적으로 의회에 귀속된다는 점을 전제로, IEEPA의 수입 규제 조항을 관세 부과 권한까지 포괄하는 것으로는 해석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³⁶⁾

특히 법원은 수출입을 규제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되어 있다 하더라도, 수출에 대한 과세는 연방헌법 제1조 제9항 제5문에 의해 명시적으로 금지되어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규제”라는 문언이 곧바로 과세 권한까지 포함한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았다. 아울러 해당 조문에서 규제와 함께 열거된 인접 단어(the neighboring words with which regulate is associated)들을 종합적으로 해석할 때 의회가 IEEPA에 과세 권한을 포함시키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근거로 제시하였다.³⁷⁾

(2) 의회수권원칙(Major Questions Doctrine)

연방의회가 경제적·정치적으로 중대한 권한을 행정부에 위임하기 위해서는 이를 명확하게(plainly) 제시해야 하며, 본 사건은 그 중요성에 비추어 ‘의회수권원칙’ 적용 대상이 된다고 판시하였다.³⁸⁾

Roberts 대법원장은 Gorsuch 및 Barrett 대법관이 동의한 의견에서, 의회가 모호한 법률 문언을 통해 “매우 중대한 권한(highly consequential power)”을 행정부에 위임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고 보면서 이른바 의회수권원칙(major questions doctrine³⁹⁾)을 원용하였다. 즉 국가적으로 중대한 정책결정에 해당하는 권한은 명확한 입법적 근거 없이 행정부에 부여

35) 이유진·한아름·김세하·김다솜, 『美 IEEPA 관세 위법 판결 및 후속 관세조치 동향』, TRADE BRIEF No.05,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 1면, 2026.

36) 김상만, 전제논문, 248-249면, 2026.

37) 상계논문, 249면.

38) 이유진·한아름·김세하·김다솜, 상계서, 1면, 2026.

39) 국내에서는 “Major Questions Doctrine” 혹은 “Major Questions Cases”로도 표기되며, 국내에서는 이를 직역하여 “중대쟁점원칙”, “중대문제법리”, “중대문제사안” 등 다양한 표현이 채용된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김상만(2026)의 연구에서 채용한 바와 같이, 연방헌법에서 규정하는 권력분립 원칙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맥락에서 “의회수권원칙”의 표기를 따르기로 한다.

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이에 대하여 Kagan 대법관은 IEEPA가 대통령에게 관세 부과 권한을 부여하지 않았다는 결론에는 동의하면서도, “규제”라는 문언이 “과세”를 포함하지 않는다는 해석만으로 충분히 결론에 도달할 수 있으므로, 별도의 의회수권원칙을 적용할 필요성은 크지 않다고 첨언하였다.⁴⁰⁾

연방대법원은 일련의 판례를 통하여 정부가 국가적으로 중대한 사안을 규율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조치가 의회의 명확한 승인에 근거하여야 한다는 법리를 발전시켜 왔으며, 이를 일반적으로 의회수권원칙으로 이해한다. 해당 원칙은 비록 국가비상사태와 같은 긴급한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국가 경제 전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책적 결정에 대해서는 의회의 명확한 수권(clear congressional authorization)이 전제되어야 함을 의미한다.⁴¹⁾

(3) 헌법상 권력분립 원칙의 충돌

트럼프 행정부의 해석에 따르면 대통령은 비상사태 선언만으로 절차적 제한 없이 기간·세율·대상국을 불문하고 무제한적인 관세를 일방적으로 부과할 수 있게 된다.⁴²⁾

정부는 IEEPA가 대통령의 일방적이고 무제한적인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권한으로 해석하였으며, 그 해석에 따르면 대통령의 다른 관세법에 있는 절차적 제약을 배제하고 얼마든지 그 수정을 행할 수 있게 된다. 의회의 심사 또한 해당사항이 없으며, 유일한 제약은 양원 3분의 2 이상의 다수결에 의한, 대통령의 거부권이 통용되지 않는 비상사태 종료에 대한 양원 결의만이 남는다. 이는 대통령의 관세정책, 나아가 보다 광범위한 경제 관련 권한의 변혁적 확대로 풀이된다. IEEPA의 반세기에 달하는 역사에 있어 대통령은 동법을 원용하여 관세를 부과한 적이 없고 타 법령에 의해 이행해왔으며, 그 규모나 범위 측면에서 문제의 EO14257 관세 조치에는 크게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었다. 이는 IEEPA 관세가 헌법상 허용된 대통령의 정당한 권한을 초과하고 있음을 시사한다.⁴³⁾

40) 김상만, 전계논문, 249-250면, 2026.

41) 상계논문, 250면.

42) 이유진·한아름·김세하·김다솜, 전게서, 1면, 2026.

43) 川瀬剛志, 『トランプ関税米国最高裁判決とトランプ関税の今後』, 特立行政法人経済産業研究所, 2026.

(4) 기타 판결

연방대법원은 IEEPA가 대통령에게 부여하는 권한을 “수입 또는 수출에 대한 조사, 조사 진행 중 자산의 차단, 규제, 지시 및 강제, 무효화, 취소, 예방 또는 금지(investigate, block during the pendency of an investigation, regulate, direct and compel, nullify, void, prevent or prohibit)” 등으로 상세하고 다소 장황하게 열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조문 어디에서도 관세 또는 조세 부과 권한에 대한 언급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아울러 IEEPA 제정 이후 약 반세기에 걸친 기간 동안 어떠한 행정부도 관세 부과를 위하여 동 법률을 인용한 전례가 없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이러한 역사적 운용 관행의 부재 역시 해당 권한을 인정하기 어려운 근거로 제시하였다.⁴⁴⁾

IV. IEEPA와 공격적 일방주의의 시사점

1. 판결의 함의: 대통령 권력의 전제

가. 헌법상의 과세 권한

연방헌법 제1조 제8절의 모두에는 과세권이 의회에 있음이 명기되어 있는데, 이는 우연이 아닌 연방의회에 부여된 가장 중요한 권한이기 때문이다. 관세는 과세권의 일부이며 세수를 발생시킨다. 과세 독립권의 중요성과 대안을 허하지 않는 과세는 미국 독립의 계기가 되었다는 점을 상기하여 헌법기초자(‘the Framers’)들은 연방헌법 제1조 제7절 제1항에 의거하여 정부를 지지하기 위해 필요한 세출은 하원의 독자적 권한임을 천명함으로써, 타 부문의 권한이 팽창하는 것을 억지하고 행정에 과세권을 부여하지 않았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는 IEEPA를 전적으로 인용하여 동법에 있는 ‘규제(regulate)’ 및 ‘수입(importation)’과 관련하여 대통령에게 규모 및 기간에 있어 무제한적으로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권한을 의회로부터 부여받았다고 해석하였다.⁴⁵⁾

“수입을 규제한다”는 문언이 그 법리적 공백을 메꾸기는 어렵다. “규제한다”의 사전적 정의에 의하면 정부가 일상적으로 실행하는 행정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폭넓은 범주이나

44) 김상만, 전제논문, 250-251면, 2026.

45) *Learning Resources, Inc. v. Trump; Trump v. V.O.S. Selections, Inc.*, 607 U.S. ____ (2026), slip op. at 5-7.

이에 과세는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다. 관세는 규제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으나 의회는 규제권과 과세권 양자를 개별적·명시적으로 언급해 왔으며, 이에 반하는 해석은 부분적으로 위헌에 해당된다.

본 사건에서의 쟁점은 관세가 통상 규제의 수단으로서 기능하느냐가 아닌, 대통령에 관세 부과 권한을 가지고 있느냐의 여부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문맥적으로(U.S.C. IEEPA §1702(a)(1)(B)에 의해 규율되는 대통령 행위의 범위) “규제한다(regulate)”의 의미가 양극단, 즉 “강제”한다는 적극적인 극단과 “금지”한다는 소극적인 극단의 중앙에 위치하기 때문에 보다 온건하고 유연한 수단으로서 관세를 포함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연방대법원은 세수를 발생시키는 관세는 그 성질을 달리하며 해당 양극의 중앙에는 위치하지 않는다고 반박하였다.⁴⁶⁾

행정부는 전시 대통령의 권한 또한 언급하는데, 그 권한이 무엇이든 대통령은 평상시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권한을 갖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또한 전시 중 판례로서 수차례에 걸친 TWEA의 개정을 통해 이를 IEEPA에 접목한다는 것은 헌법기초자(the Framers) 일부의 추론에 의존하는 희박한 관계성에 불과하여 IEEPA에 관세 부과 권한이 있다고 해석하는 근거로서 불충분하다고 반박하였다. 정부는 1962년 무역확장법232조에 관한 연방대법원 판례를 인용하나 동법은 대통령이 취하는 조치에 대해 포괄적인 권한은 부여하고 있으며 명시적으로 관세에 관한 권한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IEEPA의 해석과는 결부될 수 없다고 결론지었다.⁴⁷⁾

나. 의회수권원칙

대통령이 주장하는 권한의 경제적·정치적 중대성에 대해서 정부는 스스로 관세가 국가의 재정적자를 약 4조 달러 규모로 해소하며 관세에 의거하여 체결한 무역협정은 약 15조 달러 상당의 효과를 갖는다고 주장하였다. 이는 IEEPA 관세의 경제적·정치적 귀결은 가공할 만한 수준이며 지금까지의 의회수권원칙 적용 사안을 능가함을 의미한다. 연방대법원은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해당 규모의 중대한 정책 판단을 타 부문에 위임할 것이라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이 합리적인 해석임을 주장하였다.⁴⁸⁾

46) id., at 16-17.

47) id., at 19-20.

본 사건의 의회수권원칙의 적용을 배제하는 정부 및 소수의견의 주장 또한 설득력이 결여되어 있다고 판단되었다. 먼저 정부는 국가비상사태 관련 법제에 의회수권원칙을 적용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는데, 그 근거는 미지의 비상사태에 대응하기 위한 재량이 부여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비상사태에 관한 법제는 폭넓게 해석되어야 한다는 취지이다. 그러나 IEEPA 1호 안전이었던 이란 대사관 인질 사건으로 인한 비상사태 또한 오늘날까지 그 여파가 지속되는 등, 비상권한이 비상사태를 더욱 조장하는 경향을 가지며 의회의 권한을 수탈하는 구실로서 기능한다는 점이 우려되고 있어, 의회는 무제한적인 권한의 이양에는 명확한 조문을 적용한다고 판단하였다. 정치외교적·경제안보적 예외에 대해서는 분명 대통령은 외교·안보의 맥락에서 실질적인 재량을 부여받을 수 있으나 관세에 대해서는 의회가 배타적이고 완전한 권한을 소유하고 있는 이상 정치외교 및 경제안보에 관한 권한이 어떠한 것일지라도 명확하지 않은, 즉 폭넓은 해석의 여지를 갖는 문언에 의해 의회가 관세 부과 관련 권한을 대통령에게 이양했다고 추론할 수 없다. 정부 및 소수의견의 취지는 최우선시 되어야 할 중대 사안을 취급하는 모호한 위임규정은 폭넓은 해석의 소지를 가져야 한다고 하나, 의회는 오히려 이러한 경우를 원용하여 ‘모호한 문언 속에 포괄적인 권한 이양을 내재화하려는 시도’를 경계해야 한다고 해석하였다.⁴⁹⁾

2. 美 통상법과 공격적 일방주의

가. IEEPA를 통한 대통령의 권한 팽창 시도

(1) 대통령과 관세

미 헌법상 관세를 포함한 과세 권한이 의회에 있다는 사실은 미국의 통상협상의 역사를 보아도 명료하다. 대외통상협상 목적하에 대통령이 관세율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GATT·WTO 협상이나 FTA 체결을 위한 무역촉진권한(Trade Promotion Authority: TPA) 혹은 신속처리권한(Fast Track Authority) 등의 한시적인 권한 이양을 통해서만 가능했다. 즉 역대 정권은 관세를 무기화한 대외 협상이 불가능하였으며, 현시점 TPA는 실효된 상태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은 IEEPA를 근거로 일방적인 관세율을 설정하고 양자

48) id., at 9-11.

49) id., at 12-13.

간 협상을 거쳐 이를 수정하고, 또한 그 사이에 다양한 이유로 빈번히 관세율과 대상 품목을 변경하였다. 또한 명시적으로 협상 권한을 대통령에게 부여한 TPA조차 협상 결과 결정된 관세율은 다른 합의 도출 사안들과 함께 최종적으로 의회의 승인을 받아왔으나, IEEPA를 인용한 EO14257의 일련의 조치들은 이러한 의회의 승인을 요청하지 않았다. TPA는 행정부에 통상협상 권한을 부여하기 위한 목적 그 자체이기 때문에 의회가 사후적으로 합의 내용을 상세히 수정하는 것을 지양하며, 행정부가 상대국과 타결한 합의 사안을 그대로 수용할 것인지 심의를 거칠 것인지 보증하는 데 그치는 것일 뿐이다. 그러나 의회의 승인 없이 대통령이 국제협상에서 관세율을 결정하는 권한을 부여한 것은 아니며, 나아가 상호관세 조치와 같이 협상에 앞서 대통령이 세율을 설정할 수 있는 것은 더더욱 아니다.⁵⁰⁾

IEEPA를 통한 비상사태는 수십 년 단위로 계속되며 양원 결의를 통해 종결된 선례는 존재하지 않는다. 다수의견이 진술하는 바와 같이 IEEPA에 기인한 대통령의 권한에 대해 의회의 사후적인 감리는 거의 기능하지 않기 때문에 만약 관세 부과가 IEEPA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해석될 경우 실질적으로 관세 부과 권한이 의회로부터 대통령에게 이양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아울러 현재의 미국은 관세가 세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선진국 중에서는 유례가 없을 정도로 높은 수준으로 변화하고 있으며, IEEPA 발동을 통한 관세수입은 거액으로 안정적인 재원으로서 자리매김하고 있었다. 따라서 트럼프 행정부의 일련의 관세조치는 감세법인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One Big Beautiful Bill Act: OBBBA, 이하 OBBBA)”으로 인한 세수 공백을 보충하기 위한 핵심 재원으로써, 통상정책의 수단이 아닌 실제적인 세수 원천으로서 기능한다. 연방대법원의 다수의견은 과세권은 의회에 있다는 원칙 하에 IEEPA를 위헌으로 판단하였다.⁵¹⁾

(2) 의회수권원칙의 법리

의회수권원칙의 최신 판례를 살펴보면 해당 기관이 주장한 권한의 ‘역사적 경위와 범위’ 및 그 주장의 ‘경제적·정치적 중대성’으로 하여금 의회가 ‘그러한 권한을 부여할 의도가 있었다고 결론짓기 전 고려해 보아야 하는 이유’로 정의될 수 있는 ‘특별한 사안(extraordinary case⁵²⁾)’의 여부가 핵심이 된다. 어떠한 사안이 의회수권원칙에 해당되는지

50) 川瀬剛志, 前掲書, 4面, 2026.

51) 上掲書, 4-5面.

여부에 대해서는 ① 행정부의 정책 행위의 역사, 즉 해당 행위가 미지(昧知, *unheralded*)인지, ② 변혁의 폭, 즉 정부가 주장하는 권한이 권력의 ‘변혁적 확대(*transformative expansion*)’에 해당되는지, 그리고 ③ 경제적·정치적 중대성의 세 요건을 검토한 것으로 분석된다.⁵³⁾

본 사건도 기본적으로 이러한 해석의 준거 틀을 따르고 있으며, 연방대법원의 다수의견은 ① IEEPA를 통해 대통령이 관세를 발동한 선행이 부재하고 ② 실제로 대통령의 제한 없는 관세 인상 권한을 인정하는 것은 광범위한 경제에 대한 권한의 근본적 변혁에 해당하며 ③ 거액의 재정적자의 해소 및 무역협정 체결은 경제적·정치적으로 중대한 현안임을 지적하였다.⁵⁴⁾

문언상 “수입을 규제한다”는 표현 그 자체는 반드시 관세를 배제한다는 의미는 아니며, 다수의견 또한 “규제한다”의 의미 범위가 지극히 넓음을 인정하고 있다. 경제사적 사실로서 수입의 규제에는 관세가 포함되어 있다는 점에 더해 연방의회의 국제무역에 관한 규제 권한을 규율하는 연방헌법(제1조 제8절 제8항)에는 비록 관세에 대한 언급이 없으나, 역사적으로 의회는 관세가 수입을 규제하기 위한 수단이었음을 인식하고 있었다는 점이 지적된다.⁵⁵⁾

소수의견에서는 국제수지보호 목적으로 발동한 닉슨 쇼크(Nixon shock) 당시의 관세에 대해 IEEPA에서도 동일한 TWEA의 “수입을 규제한다”는 문언을 근거로 과세되었다는 사실을 주장하며, 만약 TWEA와 동일한 문언이 사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IEEPA 입법 당시 관세 내용을 제외한 것이라면 그것은 원고가 입증해야만 한다고 주장하였다.⁵⁶⁾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수의견은 법령 중에 있는 타 문언, 헌법상의 관계구조, 상식을 포함한 문맥을 고려했을 때 관세 부과 권한은 명시적 위임에 의하지 않고 의회가 대통령에게 부과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는데, 이는 미국의 3권분립을 고려한 판단으로 해석된다. 모호한 법 조문

52) Levin, Ronald, M. “The Major Questions Doctrine: Unfounded, Unbounded, and Confounded”, *California Law Review*, Vol.114·No.3, 136, 2024.

53) McGee, Kelly, *The Major Questions Doctrine Applies to President Trump’s Tariffs*, Notice & Comment: A Blog from the Yale Journal on Regulation, 2025.

54) *supra*, at 9-11.

55) Hufbauer, Gary Clyde, *A Better Legal Argument against Trump’s Tariffs*, The Peterson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s, 2025., Squitieri, Chad, *On That 3-3-3 Tariffs Decision*, Notice&Comment: A Blog from the Yale Journal of Regulation, 2026.

56) *id.*

의 해석에 대해 행정부의 의향에 따라 의회를 우회할 경우 3권분립이 정상적으로 기능할 수 없으며, 대통령의 독재화 진행을 방지하는 데 기여한다는 이해에 기반한 판단이다.⁵⁷⁾

나. Economic Statecraft로서의 IEEPA

1980년대 이후 미국 통상정책의 가장 대표적이고 중요한 특징으로서 공격적 일방주의 (aggressive unilateralism)가 제기된다. 미국의 공격적 일방주의 통상정책은 불공정무역의 개념을 국제규범에 비추어서가 아닌 자국의 통상법을 근거로 일방적으로 판정하며, 상대국의 무역관행에 대해 국제규범이 아닌 자국법에 의거하여 일방적인 수정을 요구하고, 그 뒤에는 통상법 301조에 의한 보복위협이 항시 도사리고 있다는 분석이다.⁵⁸⁾ 마찬가지로 오늘날 국제무역 질서에서 세계 각국의 무역 양상은 국제법에 기반하여 규범적으로 실천 되는 것이 아닌 정치력, 경제력, 안보와 같은 외적 요인이 상당 부분 작용하고 있다.⁵⁹⁾

Economic Statecraft⁶⁰⁾란 특정 국가가 그 경제력을 구사하여 타국에 대해 영향력을 행사 하고 전략적 목표를 추구하는 행위로서,⁶¹⁾ 통상 화폐로 환산될 수 있는 경제적 자원 및 수단을 이용하여 영향력을 행사하고자 하는 시도로 정의된다.⁶²⁾ IEEPA는 국가비상사태 선언을 기점으로 관세를 즉각적으로 발동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특징이 두드러진다. 또한 조치를 특정국에 한정하는 것도 가능하여 대상이나 세율을 유연하게 설계할 수 있는 여지가 있었다. 이러한 기동성은 관세를 단순한 구제 조치로서 활용하는 것이 아닌 보다 광범위한 경제전략, 지정학 전략의 일환으로서 활용하는 것을 가능케 하였다.⁶³⁾

실제로 IEEPA를 근거로 한 EO14257 등의 관세조치는 통상 문제를 넘어선 맥락에서 이

57) *supra*, at 16-17.

58) Bhagwati, Jagdish, “Aggressive Unilateralism: An Overview,” in Bhagwati & Patrick (eds.), *Aggressive Unilateralism: America’s 301 Trade Policy and the World Trading System*, Ann Arbor: University of Michigan Press, 1-45, 1990.

59) 김민재, “한국 수출기업의 무역구제제도 대응역량에 관한 실증분석: 공정성 지각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성균관대학교 박사학위 청구논문』, 3면, 2019.

60) 우리말로는 경제적 외교술, 경제적 통치술 등으로 번역되는 경향이 강하다. 유사 개념으로 ‘경제제재’, ‘지경학’, ‘경제외교’, ‘경제안보’, ‘경제전쟁’, ‘프로파간다’ 등의 개념을 열거할 수 있으며, 다양한 연구에서 혼용되어 사용되는 경우가 많다.

61) Baldwin, David, A., *Economic Statecraft*, 9, New Jersey: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85

62) 데이비ッド・A・보ールド윈, 『エコノミック・ステイトクラフト』, 16面, 産経新聞出版, 2023.

63) 上原聡, 前掲書, 7面, 2026.

용되어 왔다. 예컨대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에 의한 그린란드의 ‘지배’ 혹은 ‘매수’에 응하지 않는 경우 덴마크와 유럽 국가들에게 IEEPA 관세를 발동할 것이라 경고하였다. 또한 이란과 거래하는 국가나 베네수엘라산 원유를 조달하는 국가에 대한 ‘2차 관세’ 조치를 강구할 수 있다는 가능성도 내비친 바 있다. 브라질에 대해서는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 지지자에 대한 정보 통제를 이유로 관세가 부과된 사례도 존재한다. 신속하게 발동할 수 있으며 국가를 특정하여 저격할 수 있다는 성질은 이러한 조치의 위협효과와 더불어 협상력을 강화해 왔다고 해석할 수 있다.⁶⁴⁾

이러한 트럼프 정부의 관세정책은 경제와 국가안보를 결부시킨 일례에 해당되며, 그 기저에는 Economic Statecraft와 같은 ‘경제의 무기화’ 현상이 있다. 이른바 경제안보에 기반한 대외정책은 비단 미국에 국한되는 사상(事象)이 아니라 그 외 주요국들 사이에서도 2010년대 말 즈음부터 적극적으로 시행되기 시작하였으며, 그 근거가 될 수 있는 국내법의 정비가 각국의 공통된 흐름이 되었다.⁶⁵⁾

다. IEEPA 위협 및 후속 조치의 상존

특기할 것은 EO14257에 대한 연방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IEEPA에 근거한 관세에 대한 대통령의 권한을 부정한 것에 불과하다는 점이다. 2025년 5월 *V.O.S. Selections* 사건 CIT 1심 판결은 상호관세 및 국가별 관세가 이민 문제 해결에 직접적으로 작용하지 않으며 IEEPA가 규정하는 이례적이고 중대한 위협에 직접적으로 대응하는 (deal with any unusual and extraordinary threat)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인데, 연방대법원의 다수의견에서는 이러한 부분을 일절 언급하고 있지 않다. 이에 다양한 정치경제 및 외교상의 이유로 여전히 IEEPA를 원용할 수 있음을 상기해야 한다.⁶⁶⁾

또한 IEEPA는 수입을 규제하는 권한을 대통령에게 부여하고 있기 때문에 관세에 의하지 않은 비관세장벽 등의 통상 조치는 여전히 자행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실제 IEEPA는 과거 1980년대의 니카라과 분쟁, 최근에는 러시아-우크라이나 분쟁에 따른 對러시아 수입제한 등 적지 않은 발동 사례가 존재한다. 미 Scott Bessent 재무장관은 어떤

64) 上掲書, 7面.

65) 酒井啓亘, “經濟安全保障に対する法の規律とその課題”, 『國際問題』, 728号, 2面, 2025.

66) 川瀬剛志, 前掲書, 7面, 2026.

의미에서는 오히려 대통령의 영향력이 증대되었다고까지 발언한 바 있다. 무역수지 적자가 문제라면 관세가 아닌 수입제한조치를 취했을 때 IEEPA의 정합성을 확보할 수 있는 가능성이 보다 높다고 쉽게 예상 가능한데, 굳이 관세 조치를 취한 배경으로는 OBBBA 등 감세 정책에 따른 재정 수입의 충당과 예컨대 “중국에 관세를 100% 부과하겠다”와 같은 명시적이고 직관적인 인상을 풍기는 포퓰리즘적 메시지 효과를 대중과 국제사회에 부여할 수 있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결과론적으로 미국 시장 접근의 무기화 여지는 여전히 남아있다는 것이다.⁶⁷⁾

연방대법원의 최종 위헌 판결에도 불구하고 불확실성은 여전히 잔존하며, 오히려 증대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⁶⁸⁾ 판결 직후 몇 시간이 채 지나지 않아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법 122조에 기반한 “글로벌 관세(Global Tariff)”를 발표하였다. 미국이 “심각한 수준의 국제수지적자”에 직면하였을 경우 발동할 수 있으며, 현재 법정 상한 세율인 15%까지 관세율을 인상하였다. 122조의 특징은 IEEPA와 같이 즉각 발동이 가능하다는 점이며, 그 적용 기간은 원칙적으로 150일(2026년 7월 24일까지) 이내로 한정되고 연장하기 위해서는 의회의 승인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현시점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적 입지를 고려했을 때 의회의 동의가 불투명한데, 122조는 지속적인 관세정책의 항구적 기반이라기보다 향후 통상법 301조로 이어지기 위한 단기적 법적 권한으로서의 성격이 강하다고 평가된다.⁶⁹⁾ 동법의 명분은 상대국의 불공정무역관행에 대한 대응이며, 향후 트럼프 행정부가 관세정책을 강구할 시 중추적 법적 근거가 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 미국은 항구적인 압력 수단을

67) 上掲論文, 7面.

68) 高橋尚太郎, 『米国経済：違憲後のトランプ関税, 不確実性しながらもマイルド路線』, Economic Monitor, No.2026-018, 伊藤忠総研, 1面, 2026.

69) 본고 집필 시점 CIT는 2026년 5월 7일 트럼프 행정부의 글로벌 관세 10%에 대한 근거법인 무역법 122조를 위법이라 판단하였다. 동법은 미국의 ‘크고 심각한 국제수지(balance of payment) 적자’ 혹은 ‘달러의 급격한 평가절하 위험’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발동 가능한데, CIT는 1971년 8월 브레튼우즈 체제(Bretton Woods system) 하의 금본위제도가 중단되고 이후 변동환율제도가 도입되면서 122조가 전제로 한 구조적 문제는 사라졌다는 원고 측의 입장을 지지했기 때문이다. 122조는 “금본위제와 고정환율, 유동성 위기가 병존하던 구시대의 유물”이라 평가되기도 한다. 미국의 경우 사실상 자본 유입으로 인해 무역수지 적자가 상쇄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국제수지 적자는 0에 가까우며, 피고 측의 국제수지 적자와 무역수지 적자를 혼동한 부적절한 주장이라는 의견이 개진되었다. 西濱徹, 『米国国際貿易裁, トランプ政権の通商法122条関税を違法と判断-短期的な影響は限定的も法廷闘争が続くか, 関税政策の見直しを迫られる可能性も~』, World Trends, 第一ライフ資産運用経済研究所, 1-2面, 2026. 서울경제, 트럼프, IEEPA 대안으로 꺼낸 무역법 122조... “구시대 유물 비판도”, (검색일: 2026년 5월 13일), available at <https://www.sedaily.com/article/20011917?ref=naver>

탐색하고 있으며 가장 유력한 방안이 통상법 301조를 통한 광역적이고 분야 횡단적인 관세 적용이다. 통상법 301조에 의한 이른바 슈퍼 301조(Super 301)는 관세 부과에 근거 규정이라기보다 상대국의 제도나 관행을 불공정무역관행으로 간주하고 정책 변경을 압박할 수 있는 협상 도구에 가깝다.⁷⁰⁾⁷¹⁾ 해당 조치에는 미 무역대표부(United States Trade Representative: USTR)에 의한 조사 절차가 필요하며, IEEPA와 같이 포괄적이고 즉각적인 일률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수권은 없으나 실무적으로 보았을 때 지속적인 관세 부과 조치를 지지하는데 있어 가장 확립된 법적 근거로 평가된다.⁷²⁾

3. 경제안보 관점에서의 법리적 고찰

‘경제안보’라는 용어가 일반적으로 쓰이기 시작한 계기는 2010년대에 들어 강화된 국제정세의 변화와 요동치는 국제경제질서였다. 전통적인 국가안보를 위해 경제를 무기화하는 행위를 경제안보라 정의할 경우, 무력사용금지 원칙이 규범적으로 확립된 현재의 국제사회에 있어 비군사적인 수단을 통해 주로 국제경제 관계에서 자국의 안보를 실현하고자 하는 전략의 체계화 현상이 발생한 것으로, 국제법의 발전에 따른 현상이기도 하다.

G7을 중심으로 한 주요국들은 국제법을 중심으로 서방 중심의 세계관을 구축하였는데 이에는 자유, 평등, 인권, 국민주권, 삼권분립 등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상호 공통의 가치관과 기본원칙을 수립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가치 및 원칙을 전략적 도구로서 활용하여 상대국을 압박하고 자국 내에서는 독자적 규범(이는 비단 법률에 국한되지 않는다)을 통해 장벽을 생성함으로써 패권 확장뿐 아닌 기존 질서의 파괴를 초래하고 있다는 점이 상기되어야 한다.⁷³⁾

70) 助川成也, 『米通商法301条時代に備えよ: ASEANは関税ではなく制度で守れ』, 世界經濟論IMPACT No.4244, 國際貿易投資研究所.

71) 미국 통상법 301조는 외국의 불공정무역관행에 대응하기 위한 일방적 무역보복 권한을 규정한 조항이다. 반면 슈퍼 301조는 1974년 통상법 제정 이후 “1998년 종합무역법(Omnibus Trade & Competitiveness Act)”의 무역법 개정을 통해 도입된 일종의 강화 메커니즘으로, 특정 국가를 우선 협상대상국으로 지정하여 시장개방 압박을 강화하는 공격적 통상정책 및 협상수단의 성격을 갖는다. Bello, J. H., & Alan F. Holmer, “Section 301 of the Trade Act of 1974: Requirements, Procedures, and Development”, *Northwestern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 Business*, Vol.7, 1986.

72) 上原聡, 前掲書, 4-5面, 2026.

73) 河野正英, “米国の安全保障関連邦-通商と投資を中心に-”, 『倉敷芸術科学大学紀要』, 第25巻, 50面, 2019.

유의해야 할 점은 Economic Statecraft와 같은 경제의 무기화의 일환으로서 자국 안보의 청사진을 전략적으로 구축하고 이를 각국이 국내법적 제도로써 정착시키고 실행에 옮겨 왔다는 점이다. 이러한 국내법 제도가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관련 국제법과의 정합성과 국제규범에 기반한 국내법 실행의 정당성을 시야에 두어야 한다. 산업정책과 같은 국내적 측면과 통상정책이라는 대외적 측면 양방을 동시에 고려하며 국내법과 국제법이라는 법률에 의한 규율을 상호 연동시킴으로써 경제안보라는 전략적 개념을 정착해나가야 한다.

IEEPA에 근거한 EO14257은 1·2·3심 그 합법성이 부정되었다. 그러나 전술한 바와 같이 IEEPA의 위협은 관세를 제외한 비관세장벽 및 외교안보상의 조치라는 형태로 상존하며, 통상법 301조와 같은 후속 조치들이 예상되는 가운데 미국은 자국의 일련의 조치가 국가 안보를 위한 조치임을 시사하는 서면을 제출하는 등 WTO GATT21조 안보예외조항의 활용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현실적으로 해당 안보예외조항은 “전시 및 그 밖의 국제관계적 비상사태(GATT §21(b)(iii))” 조항을 두고 있어 예외조치로서 인정받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⁷⁴⁾ 그러나 1947년에 확립된 이러한 예외규정을 최근의 경제동반자협정이나 투자협정 등에 규정된 안보예외와 비교함으로써, 현대적인 국가안보전략 차원에서의 경제안보적 정책으로서 타당성을 확보할 수 있을지 여부는 미지수이다. 따라서 경제안보의 관점에서 취할 수 있는 조치가 국제법상의 의무의 예외적용으로서 인정받기 위한 요건을 재검토하고, 그 예외규정의 현대화를 통해 경제안보적 성격의 국내법을 국제규범의 규율하에 적절히 배치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V. 결론

본 연구는 IEEPA의 역사적 배경 및 제정 경위, 정의와 법률 체계를 상세히 분석하고, 이를 근거로 한 트럼프 행정부의 EO14257 등 관세 행정명령과 연방대법원을 위시한 심리 및 판결을 중심으로 통상법과 헌법적 권력구조의 관점에서 그 법적 의의와 한계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본 사안은 단순한 개별 통상조치의 적법성 문제를 넘어, 현대 국제통상질서에서 행정부 권한의 확대와 그 통제 가능성이라는 미국 국내 측면에서는 보다 정치적·

74) 酒井啓亘, 前掲論文, 4-5面, 2025.

행정적으로, 국제적 측면에서는 보다 경쟁적이며 참여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를 통해 도출된 합의 및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연방대법원 등은 IEEPA가 대통령에게 관세 부과 권한을 부여하지 않는다고 명확히 판단함으로써, 통상정책에 있어 과세권은 여전히 의회에 귀속된다는 헌법적 원칙을 재확인하였다. 특히 “수입을 규제(regulate importation)” 할 수 있다는 문언이 관세 부과 권한을 포함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하며, OBBBA로 인한 세수 공백을 충당하고 국가 재정을 개선하기 위한 조세 제도로 해석하며, 대통령의 권한 팽창 등의 권력적 목적성을 갖는 등 다원적인 조치라 분석하였다.

둘째, IEEPA는 국가비상사태를 명분으로 한 경제안보적 담론을 형성하며, 헌법상의 명시적 법률의 경계를 비형식화하고 의회의 통제를 약화시키는 등 궁극적으로 3권분립 체제를 위협할 수 있다고 분석하였다. IEEPA를 통해 대외협상에 앞서 관세율을 확정하고 의회의 동의를 얻지 않으며, 실질적으로 양원에 의한 비상사태 종결의 전례가 없는 점 및 대통령으로의 무제한적인 관세 부과 권한 이양 등 행정부로의 과도한 권력 이양의 위험성이 내포되어 있음을 분석하였다.

셋째, 조세 권한은 연방의회의 권속이라는 연방헌법의 준수 필요성을 의회수권원칙을 재조명함에 따라 명확히 하였다. 정치외교적·경제안보적 예외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실질적인 재량권을 부여받을 수 있으나 관세에 대해서는 의회가 배타적이고 완전한 권한을 소유하고 있어 명확하지 않은, 즉 폭넓은 해석의 여지를 갖는 문언에 의해 의회가 관세 부과 권한을 대통령에게 이양했다고 해석하지 아니함으로써 의회수권원칙을 유지하였으며, 의회는 오히려 모호한 문언 속에 포괄적인 권한 이양을 내재화하려는 시도를 각별히 경계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넷째, IEEPA를 인용한 본 EO14257 등의 관세조치는 공격적 일방주의의 대표적인 형태인 *Economic Statecraft*의 성질을 지니고 있으며 통상 문제의 영역을 넘어선 맥락에서 이용되어 왔다. 최종 위헌 판결로 인해 그 효력이 상실되었으나 근거법에 대한 판결에 불과하며 발동을 위한 법적 절차가 기동적이라는 측면에서 비관세장벽을 활용한 적용이 추후 다시금 발생할 수 있으며, 무역법 122조 및 301조와 같은 IEEPA와 궤를 함께하는 공격적 일방주의가 여전히 현재진행중이라는 사실을 간과할 수 없다.

다섯째, 국제사회에서는 비군사적인 수단을 통해 국제경제 관계에서 자국의 안보를 실현하고자 하는 전략의 체계화 현상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경제안보라는 개념으로 정립된다. 국내법과 국제법 양 법률에 의한 규율을 상호 연동시킴으로써 경제안보라는 전략적 개념을 정착시켜나갈 필요가 있다. GATT 제21조 안보예외조항 등 경제안보적 조치가 국제법적으로 예외 적용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을 재검토하고, 해당 예외규정의 현대화 논의를 통해 경제안보적 성격의 국내법을 국제규범의 규율하에 적절히 배치해야 한다.

IEEPA와 같은 법률수단의 전략적 운용은 국내법을 패권적 수단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제도화의 일환으로 해석된다. 현재 무역확장법 232조를 활용한 품목관세, 무역법 122조를 활용한 글로벌 관세 및 향후 실행 가능성이 농후한 통상법 301조(슈퍼 301조)의 발동과 IEEPA를 기반으로 한 법·기술적 일방주의는 더욱 심화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이는 국제규범의 추가적인 분절화를 초래할 수 있다. 즉 IEEPA를 근거로 한 미국의 상호관세 조치와 일련의 관세정책은 국내법을 전략적 패권 도구로 전환하려는 현대 경제안보 질서의 단면을 보여준다. 특히 연방대법원의 위헌 판결은 행정부의 광범위한 비상권 행사에도 헌법적 한계와 사법적 통제가 존재함을 재확인하였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의를 지닌다. 그러나 통상법 301조를 비롯한 미국의 무역법 체제는 여전히 자국중심적·일방주의적 규범을 국제질서에 투사할 수 있는 잠재력을 유지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경제안보, 공급망, 신냉전 패러다임 등을 명분으로 한 법적 확장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이에 따라 각국은 국제규범과 국내법의 충돌 가능성에 대한 법적·제도적 대비를 강화해야 하며, 국내법의 역외적·패권적 적용이 국제법 질서를 잠식하지 않도록 제도적 견제장치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 역시 통상과 안보, 국제규범과 국내법이 교차하는 새로운 질서 변화에 대응하여 법적·외교적·통상전략적 대응 역량을 종합적으로 재정비해야 할 시점에 놓여 있다. 현대 통상환경에서 국내법은 더 이상 일국적 규범에 머물지 않으며, 국제질서 재편의 핵심 수단으로 기능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법적 합의와 파급에 대한 지속적인 학제적 연구가 요구된다.

참고문헌

- 김민재. “한국 수출기업의 무역구제제도 대응역량에 관한 실증분석: 공정성 지각의 매개 효과를 중심으로”. 『성균관대학교 박사학위청구논문』. 2019.
- 김상만. “미국 연방대법원의 IEEPA 상호관세 위법 판결의 주요 쟁점 및 대응방안에 관한 고찰”. 『법학연구』. 제29집·제1호. 2026.
- 류예리. “미국 상호관세 협상에서의 경제안보와 지식재산권 보호 연계에 관한 연구”. 『국제거래와 법』. 통권 51호, 2025.
- 서은아. 『IEEPA에 근거한 트럼프 행정부 관세 조치에 관한 법적 쟁점 검토』. IFANS 주요국제문제분석 2025-16.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 2025.
- 이누리.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행정명령의 합헌성 논쟁: 5.29.자 미국제무역법원의 위헌 판결 분석을 중심으로』. 세계헌법재판 조사 연구보고서 2025년 제5호. 2025.
- 이상신. “미국의 상호관세 판결의 분석과 시사점”. 『관세학회지』. 제27권·제1호. 2026.
- 이서진·박효민. 『미국의 금융제재 방식 및 활용 검토』. 무역안보 Brief 2. 전략물자관리원. 2021.
- 이유진·한아름·김세하·김다솜. 『美 IEEPA 관세 위법 판결 및 후속 관세조치 동향』. TRADE BRIEF No.05.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 2026.
- 이정아·한주희. 『美 국제무역법원(CIT) IEEPA 관세 무효 판결』. 통상이슈브리프.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 2025.
- 조용순. “미국의 「국제비상경제권한법」과 영업비밀의 보호”. 『한국산업보안연구』. 제14권·제1호. 2024.
- 최동준. “최근의 미국과 중국의 수출통제제도 강화영향에 대한 비교연구-미국 수출통제개혁법(ECRA) 및 중국수출통제법을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법학논집』.

제25권·제3호·통권73호. 2020.

최철영. 『미국의 대외경제제재관련 법제연구』. 한국법제연구원. 2001.

한아름·이유진, 『美 IEEPA 관세 판결 전 관세환급 실무대응 점검』. TRADE BRIEF, NO 04.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 2026.

KOTRA. APEC 연례 한미 정상회담(10.29, 경주) 타결 주요 내용. 2025.

Baldwin, David A. *Economic Statecraft*. New Jersey: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85.

Bello, J. H., & Alan F. Holmer. “Section 301 of the Trade Act of 1974: Requirements, Procedures, and Development”. *Northwestern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 Business*. Vol.7. 1986.

Bhagwati, Jagdish. “Aggressive Unilateralism: An Overview”. in *Bhagwati & Patrick (eds.). Aggressive Unilateralism: America’s 301 Trade Policy and the World Trading System*. Ann Arbor: University of Michigan Press. 1990.

Carter, Barry E. *International Economic Sanction: Improving the Haphazard U.S. Legal Regime*. 1998.

Coates, Benjamin A. “The Secret Life of Statutes: A Century of the Trading with the Enemy Act”. *Modern American History*. Vol.1·Issue.2. 2018.

Fergusson, If, Dianne E. Rennack, & Jennifer K. Elsea. *The International Emergency Economic Powers Act: Origins, Evolution, and Use*. Washington D.C.: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2020.

Hayakawa, K., *Trade Effects of US Tariffs under Trump 2.0*, IDE Discussion Paper 976 2025-09, Institute of Developing Economies(IDE-JETRO). 2025.

Hufbauer, Gary Clyde. *A Better Legal Argument against Trump’s Tariffs*. The Peterson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s. 2025.

Learning Resources, Inc. v. Trump; Trump v. V.O.S. Selections, Inc. 607 U.S. _____. 2026.

Levin, Ronald M. “The Major Questions Doctrine: Unfounded, Unbounded, and Confounded”. *California Law Review*. Vol.114・No.3. 2024.

McGee, Kelly. “The Major Questions Doctrine Applies to President Trump’s Tariffs”. Notice & Comment: A Blog from the Yale Journal on Regulation. 2025.

Meyer, T. “The Prospects and Implications of Legal Challenges to President Trump’s IEEPA Tariffs”. *The School of Public Policy Publications*. Vol.18・No.1. 2025.

Mitchell, Ryan. *IEEPA’s Changing Context, Multipolar Sanctions, and the Evolving Limits of Economic Security*. 2026.

Rong, L. U. O. “The Weaponization of IEEPA Trade: A Hegemonic Turn in Legal Tools”. *US-China Law Review*. Vol.26・No.6. 2025.

Squitieri, Chad. *On That 3-3-3 Tariffs Decision*. Notice & Comment: A Blog from the Yale Journal of Regulation. 2026.

The White House. Fact Sheet: President Donald J. Trump Brings Home More Billion Dollar Deals During State Visit to the Republic of Korea. 2025.

市川雅浩. 『米国際貿易裁判所のトランプ関税一部差し止め命令と今後の展望』. 市川レポート. 三井住友DSアセットマネジメント. 2025.

上原聡. 『米最高裁 `IEEPA関税を違法と判断一判決がもたらす憲法上および政策上の帰結一』. 丸紅ワシントン報告. 2026.

小野純子. “米国の対中国輸出管理政策: エマージング・テクノロジーと経済安全保障”. 「国際安全保障」. 第49巻・第1号. 2021.

川瀬剛志. 『「関税男」トランプは本当に関税を引き上げるか』. 独立行政法人経済産業研究所. 2024.

- 川瀬剛志. 『トランプ関税米国最高裁判決とトランプ関税の今後』. 独立行政法人経済産業研究所. 2026.
- 河野正英. “米国の安全保障関連邦-通商と投資を中心に-”. 「倉敷芸術科学大学紀要」. 第25巻. 2019.
- 酒井啓亘. “経済安全保障に対する法の規律とその課題”. 「国際問題」. 728号. 2025.
- 助川成也. 『米通商法301条時代に備えよ: ASEANは関税ではなく制度で守れ』. 世界経済論 IMPACT No.4244. 国際貿易投資研究所.
- 高橋尚太郎. 『米国経済: 違憲後のトランプ関税, 不確実性ながらもマイルド路線』. Economic Monitor. No.2026-018. 伊藤忠総研. 2026.
- 西濱徹. 『米国際貿易裁, トランプ政権の通商法122条関税を違法と判断~短期的な影響は限定的も法廷闘争が続くか, 関税政策の見直しを迫られる可能性も~』. World Trends. 第一ライフ資産運用経済研究所. 2026.
- 早川和伸. 『第2回 トランプ2.0が世界の対米輸出に与えた影響-相互関税導入前まで, 世界を見る眼【特集】世界はトランプ関税にどう対応したか』. アジア経済研究所『IDEスクエア』. 2025.
- 前田和馬. 『米国際貿易裁判所がトランプ関税の差し止め命令~今後の3つのシナリオ~. US Trends』. 第一生命経済研究所 経済調査部. 2025.
- みずほ銀行 国際戦略情報部. 『Global Intelligence Flash【米国】第二次トランプ政権の関税政策~司法の判断と今後の展開~』. 株式会社みずほ銀行. 2026.
- PWC. 『米国連邦巡回区控訴裁判所(CAFC)による相互関税および中国, メキシコ, カナダに対する国別関税に関する判決』. Customs and Trade News. 2025.
- JETRO. 『トランプ政権の関税措置の解説』. 日本貿易振興機構. 2025.
- JETRO. 『第2次トランプ政権の追加関税措置』. 日本貿易振興機構. 2025.
- デイビッド・A・ボールドウィン. 『エコノミック・ステイトクラフト』. 産経新聞出版. 2023.

서울경제, 트럼프, IEEPA 대안으로 꺼낸 무역법 122조...“구시대 유물 비판도”, (검색일: 2026년 5월 13일), available at <https://www.sedaily.com/article/20011917?ref=naver>

U.S.C. §1622.

U.S.C. §1631.

U.S.C. §1701.

U.S.C. §1702.

U.S.C. §1706.

IEEPA §201.

IEEPA §202.

IEEPA §207.

NEA §202.

[국문초록]

美 EO14257 인용법 IEEPA의 판결 및 함의:

통상법에 의거한 공격적 일방주의

김민재

2025년 1월 20일 출범한 트럼프 행정부 2기는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한 EO14257 등의 관세 행정명령을 시행함으로써 기존 통상법 체계에 중대한 문제를 제기하였다. 미 행정부는 동법상 “수입을 규제(regulate importation)”할 수 있는 권한을 근거로 포괄적인 관세 부과로서 정당화하려 하였고, 이는 통상법과 헌법상 권력분립 구조에 관한 중요한 법적 쟁점을 야기하였다.

본 연구는 IEEPA의 정의와 법 체계 및 핵심 조항을 분석하고, 1심에서 3심에 이르기까지의 각 법원의 판결을 종합적으로 분석 후 논의점을 도출, 이를 바탕으로 IEEPA 등 여타 통상법을 통해 여전히 광범위한 제량 및 권한을 대통령에게 부여함으로써 상존하는 ‘공격적 일방주의(aggressive unilateralism)’의 성질을 법리학·통상학적 측면에서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문헌연구와 판례분석을 통해 첫째, IEEPA는 대통령에게 관세 부과 권한을 부여하지 않으며 관세는 본질적으로 조세의 영역에 해당되고, IEEPA는 대통령의 권한 팽창 등의 권력적 목적성을 가진다는 점, 둘째, IEEPA는 의회수권원칙을 약화시키고 행정 부로의 과도한 권력 이양이라는 위험성을 내포하며, 셋째, 명시적 의회수권원칙을 통해 관세에 대해서는 의회가 배타적이고 완전한 권한을 소유하며, 넷째, IEEPA는 Economic Statecraft로서의 성격을 갖고 여타 통상법과 마찬가지로 여전히 그 위험이 상존하고 있으며, 마지막으로 국내법과 국제법의 상호 연동을 통한 경제안보 정책의 정립과 경제안보적 성격의 국내법을 국제규범의 규율하에 적절히 배치시켜야 한다는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IEEPA를 근거로 한 미국의 상호관세 조치와 일련의 관세정책은 국내법을 전략적 패권 도구로 전환하려는 현대 경제안보 질서의 단면을 보여준다. 특히 연방대법원의 위헌 판결은 행정부의 광범위한 비상권 행사에도 헌법적 한계와 사법적 통제가 존재함을 재확인하였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의를 지닌다. 각국은 국제규범과 국내법의 충돌 가능성에 대한 법적·제도적 대비를 강화해야 하며, 국내법의 역외적·패권적 적용이 국제법 질서를 잠식

하지 않도록 제도적 견제 장치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 역시 통상과 안보, 국제규범과 국내법이 교차하는 새로운 질서 변화에 대응하여 법적·외교적·통상전략적 대응 역량을 종합적으로 재정비해야 할 시점에 놓여 있음을 상기해야 한다.

주제어: 경제안보, 공격적 일방주의, 국가비상사태, 상호관세, 연방대법원, 연방헌법, 의회수권원칙, Economic Statecraft, EO14257, IEEPA

[Abstract]

U.S. Executive Order 14257 and Judicial Interpretations of the IEEPA: Implications for Aggressive Unilateralism in Trade Law

Minjae Kim

The second Trump administration, inaugurated on January 20, 2025, has raised significant challenges to the existing framework of U.S. trade law by implementing Executive Order 14257 (EO14257), which imposes tariffs pursuant to the International Emergency Economic Powers Act (IEEPA). The administration sought to justify the imposition of comprehensive tariffs based on its authority under IEEPA to “regulate importation,” thereby giving rise to critical legal issues concerning both trade law and the constitutional principle of separation of powers.

This study examines the definition, legal structure, and key provisions of IEEPA, and conducts a comprehensive analysis of judicial decisions from the trial level through appellate review. Based on this analysis, the study identifies key legal issues and further explores the enduring nature of “aggressive unilateralism,” whereby broad discretion and authority continue to be conferred upon the President through IEEPA and other trade-related statutes, from both legal and international trade perspectives.

Through doctrinal analysis and case law review, this study finds that, first, IEEPA does not grant the President the authority to impose tariffs, as tariffs inherently fall within the domain of taxation, and that IEEPA reflects an expansionary tendency in executive power. Second, IEEPA weakens the major questions doctrine and entails the risk of excessive transfer of authority to the executive branch. Third, under the principle of explicit congressional authorization, Congress retains exclusive and plenary authority over tariffs. Fourth, IEEPA functions as an instrument of economic statecraft and, like other trade laws, continues to pose structural risks. Finally, the study suggests that economic security policy should be established through a coherent interaction between domestic and international law, and that domestic laws with economic security implications should be properly situated within the framework of international legal norms.

The United States' reciprocal tariff measures and broader trade policies grounded in the IEEPA illustrate a defining feature of the contemporary economic security order: the transformation of domestic law into a strategic instrument of hegemonic power. In this regard, the U.S. Supreme Court's ruling declaring certain measures unconstitutional is particularly significant, as it reaffirms that even the expansive exercise of executive emergency powers remains subject to constitutional constraints and judicial review. Against this backdrop, states must strengthen their legal and institutional preparedness for potential conflicts between international norms and domestic legislation, while reinforcing mechanisms to prevent the extraterritorial and hegemonic application of domestic law from eroding the international legal order. Korea, likewise, stands at a critical juncture requiring a comprehensive recalibration of its legal, diplomatic, and trade-strategic capacities in response to an emerging order in which trade, security, international norms, and domestic law increasingly intersect.

Keywords: Aggressive unilateralism, Economic security, Economic Statecraft, EO14257, Federal Constitution, IEEPA, National emergency, Major questions doctrine, Reciprocal Tariffs, U.S. Supreme Court